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침해사고 예방 체계 강화〉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22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침해사고 예방 체계 강화(안 제48조의4제2항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2. 30.

다. 회 부 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명령이 가능한지 해석이 모호한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에서 내부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해당 기업이 관계 기관의 원인 분석을 거부하고 서버 파기 등 자료를 보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예방조치와 그에 필요한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Ⅲ. 검토의견

1. 침해사고 예방 체계 강화(안 제48조의4제2항 등)

가. 개정안 요지

-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과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음(안 제48조의2 제2항 및 제5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48조의4 제6항).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생략)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 확산 방지, 사고대응,	② ----- -----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u>침해사고의 예방, 원인</u>

현행	개정안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공공기관등은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u>침해사고의 원인 분석</u>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u>침해사고의 원인 분석</u>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u>분석</u>,----- ----- ----- -----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u>침해사고의 예방, 원인 분석</u>----- ----- ----- ----- -----. ⑥ ----- -----<u>침해사고의 예방, 원인 분석</u>----- ----- ----- ----- ----- ----- ----- ----- ----- -----

현행	개정안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 ----- ----- -----.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민·관합동조사단은 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u>침해사고의 원인 분석</u> 및 대책 마련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못하며, 원인 분석이 끝난 후에는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⑦ ----- ----- ----- ----- <u>침해사</u> <u>고의 예방, 원인 분석</u> ----- ----- -----.
⑧ (생략)	⑧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출입조사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¹⁾한 경우에만 가능한 조치로, 최근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업자들이 침해사고 의심 상황만으로는 침해사고 발생 신고를 꺼리거나 의도적으로 신고를 지연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타나 실질적으로 침해사고에 대한 조기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침해사고 발생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 예방 차원에서 조치명령, 자료보전명령,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등(이하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 다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법률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이어져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게 되지 않는지 논의가 필요함.
- 특히,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조사를 수인하지 않으면 형벌 또는 과태료 대상²⁾이 되어 수범자의 권리의무관계

1)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사 후 의결하여 현재 본회의에서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³⁾은 개정안과 유사하게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 침해사고 발생 여부 확인, 조치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발생 의심 정황이 있더라도 모든 경우에 허용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구성한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침해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의 이행 또는 자료 보존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정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일한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방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므로 중복 개정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2)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3) 의안번호 제2214896호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법률상 의무 부과 전제가 되는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라는 용어가 불명확하고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영업비밀, 개인정보 침해 및 2차 유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며,
- 조사 대상의 과도한 확대에 의해 행정 비용의 증가 및 보안 현장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여 실질적으로 침해사고에 대한 국가의 대응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28